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03호)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90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2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개요	5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 적용기한 연장,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한도 상향(정희용의원안, 이종욱 의원안, 조인철의원안)	8

I. 개요

1.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2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3. 4.
- (3) 회 부 일 : 2026. 3.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시적인 규정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및 한도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며, 감면한도도 연 300만원

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2.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1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4. 8.
- (3) 회 부 일 : 2026. 4.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3.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7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30.
- (3) 회 부 일 : 2026. 5.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개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¹⁾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감면특례 대상자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임. 이러한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는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2011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 신설 당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율은 50%로 하향 조정하였음.

이후 2015년 세법 개정으로 감면율을 70%로 다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간 150만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8년 세법 개정시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90%로 상향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감면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년까지로 연장하였음. 또한 2024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대상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 연혁]

구분	2011년 개정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6년 개정	2018년 개정	2022년 개정	2024년 개정
적용대상	청년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 절 근로자
감면기간	취업후 3년간		취업 후 3년간 (청년은 5년간)				
감면율	100%	50%	70%		70%(청년 90%)		
감면한도	-		150만원			200만원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1조 1,3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1조 1,638억원, 2026년에는 1조 2,26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연도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지출규모	8,397	9,667	9,609	11,384	11,638	12,26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 적용기한 연장,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한도 상향(정희용의원안, 이종욱의원안,
조인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요건: 중소기업체 ○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u>3년간</u>(청년은 <u>5년간</u>) ○ 감면율: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 ○ 감면한도: <u>200만원</u> ○ 적용기한: <u>2026.12.31.까지</u> 취업	□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감면기간: - 정희용의원안: 취업일부터 <u>5년간</u>(청년은 <u>7년간</u>) ○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u>300만원</u>(정희용의원안) ○ 적용기한: - <u>삭제</u>(정희용의원안) - <u>2029.12.31.까지</u> 취업(이종욱의원안) - <u>2031.12.31.까지</u> 취업(조인철의원안) ○ 시행일: - 공포일(정희용의원안) - 2027. 1. 1.(이종욱의원안, 조인철의원안) ○ 적용례: -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정희용의원안)

* 정희용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3), 이종욱의원안 2026. 4. 8. 발의(의안번호 18190), 조인철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20)

□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기간 연장, 감면율 상향 또는 감면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감면기간 및 감면한도에 대하여, 정희용의원안은 현행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간(청년은 7년간)으로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과 관련하여는, 정희용의원안은 현행 2026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동 감면특례제도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이종욱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로, 조인철의원안은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의 취업 유인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청년고용동향 통계²⁾에 따르면, 2025년 청년 고용률은 45.0%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 69.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 또한 전체 실업률 2.8% 대비 6.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

2) 본 조세특례조항에서의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통계청 청년고용동향 통계에서의 '청년'의 범위는 15~29세로서 일부 대상집단이 제외되는 차이가 있으나, 집단 간 비교로서의 의미 도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근 3년간 전체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청년 고용률 저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청년(15세~29세) 및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고용률	전체 ¹⁾	66.8	65.9	66.5	68.5	69.2	69.5	69.8
	청년	43.5	42.2	44.2	46.6	46.5	46.1	45.0
실업률	전체	3.8	4.0	3.7	2.9	2.7	2.8	2.8
	청년	8.9	9.0	7.8	6.4	5.9	5.9	6.1

주: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총인구, 고용률=취업자수/총인구,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주1: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임.

자료: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장애인의 경우에도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2024년 상반기 기준 고용률은 33.8%로 전체 고용률 63.5%에 비해 낮고, 실업률은 5.1%로 전체 실업률 3.0%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24년 상반기 장애인의 고용지표 현황]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생산가능인구	65.4	63.5	3.0
장애인 생산가능인구	35.7	33.8	5.1

주: 경제활동참가율은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고용률은 총인구 대비 취업자수의 비율을,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 눈에 보는 2025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5. 8.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실업률은 2.8%로 전체 인구 대비

실업률과 비슷한 수준이나 고용률은 46.7%로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69.8% 대비 낮은 수준임.

[2025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실업률 현황]

(단위: %)

구 분	고용률	실업률
생산가능인구	69.8	2.8
60세 이상	46.7	2.8

주: 경제활동참가율은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고용률은 총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데, 20대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하여 높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3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고용률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최대 22.2%p의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기준 성별·연령대별 고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성 고용률(A)	57.8	87.6	90.8	87.0	55.6
여성 고용률(B)	62.6	73.1	68.6	67.9	39.0
격차(B-A)	4.8	△14.5	△22.2	△19.1	△16.6

주: 고용률은 총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국가데이터처

이처럼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률이 평균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소

특세 감면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취업 유인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일반적으로 청년 등의 취업자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 고용노동부³⁾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인력부족률은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2.7%로 300인 이상 사업체(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들의 사업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피현상을⁴⁾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셋째,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

3)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4) 한국경영자총회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38.5대 1인데 반해 300인 미만인 기업은 5.8대 1 수준이었음(아시아경제, “‘스펙쌓기 비용’ 생각하면 대기업 포기못해”…高스펙자 딜레마”, 2018년 1월 11일자)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규모의 월평균 임금은 약 420.5만원인데 비해 대규모 기업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약 647.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약 226.7만원으로 최근 5년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처럼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체 규모별 월 평균 임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규모(A)	3,689	3,869	3,966	4,079	4,205
300인 이상 사업체(B)	5,582	5,922	6,071	6,220	6,472
격차(B-A)	1,893	2,053	2,105	2,141	2,267

자료: 각 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조세특례심층평가⁵⁾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은 세제지원 혜택이 크지 않고,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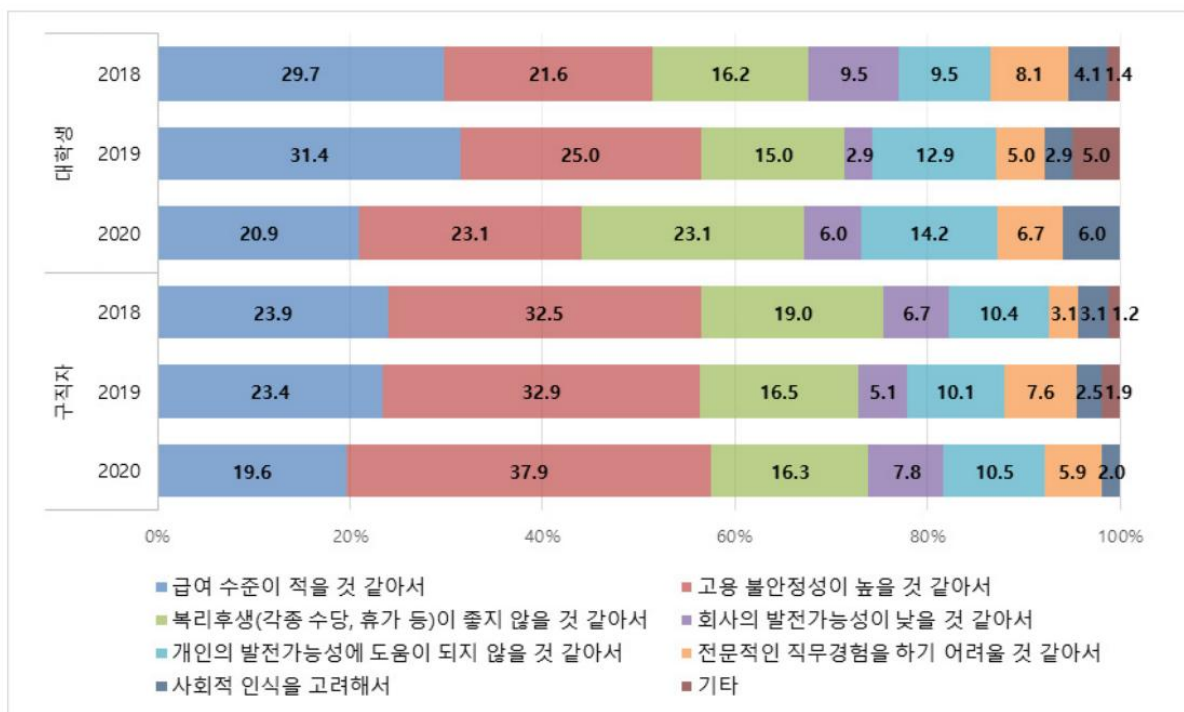
5)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9.

면한도 적용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어서 동 조세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되었음.

둘째, 청년 등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면 동 제도로 인한 중소기업 취업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⁶⁾에 의하면 대학생·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불안정성”이고 “급여수준”은 약 2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학생·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자료: 「청년 사회생활 지원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21. 6.

6) 「청년 사회생활 지원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21. 6.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⁷⁾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이 향후 10년 동안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졸 청년의 경우에는 경력 초기 임금과 더불어 경력 초기 기업규모⁹⁾ 및 일자리 안정성 여부¹⁰⁾도 향후 10년 이상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청년들이 미취업상태에 머무르면서까지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 때문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애 전반에 미치는 첫 일자리 특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첫 일자리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임.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특례 정책은 임금과 같은 첫 일자리 특성의 장기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소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정회용의원안의 경우 감면기간

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보도자료, 2018. 3. 7.

8) 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대졸 남성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 받았던 임금이 평균보다 10% 높을 경우 1~2년 차 때의 임금은 평균보다 약 4.5% 정도 높았고 11년 차 이상에서도 약 3.8% 정도 높았으며, 4년제 대졸 남성의 경우에도 첫 일자리 임금이 평균보다 10%보다 높은 경우 1~2년 차의 임금은 평균보다 약 4.6% 높고 9~10년 차에도 4.4%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첫 직장의 효과가 장기간 이어졌음

9) 4년제 대졸의 경우, 첫 일자리 사업체 종사자 수가 100인 이상인 졸업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평균에 비해 경력 초기 임금이 약 9~13% 정도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경력 10년차까지도 뚜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10) 경력 초기 상용직 여부(또는 임시·일용직 여부)는 나중의 임금과 고용에 대체로 긍정적(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4년제 대졸 그룹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강화되고 있음

연장이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희용의원안은 현행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간(청년은 7년간)’으로 각각 2년씩 추가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나, 그 적용기준이 새롭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기존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희용의원안과 같이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희용의원안은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종욱의원안은 적용기한을 3년, 조인철의원안은 5년 연장하고 있음.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희용의원안에 의할 경우 7년

간 총 8조 2,219억원(연평균 1조 1,746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이종욱의원안에 의할 경우, 7년간 총 3조 9,697억원(연평균 5,671억원), 조인철의원안에 의할 경우 2028~2036년까지 9년간 총 6조 8,365억원(연평균 7,5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정희용의원안·이종욱의원안)]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누적	연평균
정희용 의원안	△2,907	△6,003	△9,299	△12,802	△16,525	△17,063	△17,620	△82,219	△11,746
이종욱 의원안	△2,556	△5,279	△8,177	△8,034	△7,874	△5,129	△2,648	△39,697	△5,671

[개정안에 따른 세수추계 결과(조인철의원안)]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조인철 의원안	△2,556	△5,279	△8,177	△10,848	△13,686	△11,131
	2034	2035	2036	누적	연평균	
	△8,395	△5,469	△2,824	△68,365	△7,596	

문 의 처

02)6788-5157